

## 공동기기실 운영규정

### [ 제 1 장 총 칙 ]

##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한의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한다.)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연구기자재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자재 활용을 극대화하며, 연구를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제 2 조 (설치)

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원내 공동기기실을 두어(이하 “기기실”이라한다.) 공동 기기와 장비를 관리한다.

### [ 제 2 장 직 무 ]

#### 제 3 조 (직무내용)

본 기기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공동연구기기와 공동시설 장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연구용 공동기기 및 장비의 선정, 유지 및 관리
- ② 공동기기 및 장비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
- ③ 기기의 보수 및 폐기
-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 [ 제 3 장 기 구 ]

#### 제 4 조 (조직)

선임연구본부장 아래 기기실을 두고, 기기관리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담당자를 둔다.

#### 제 5 조

(운영위원회 구성) 기기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은 원장이 구성하며, 기기관련 연구부서센터장 및 기기담당자로 구성한다.

#### 제 6 조 (운영위원장)

운영위원장은 선임연구본부장이 되며,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
#### 제 7 조 (담당자 위촉 및 직무)

① 기기실 담당자는 연구기기 분야에 재능과 기술이 있는 책임자를 원장이 위촉한다.

② 기기실 담당자는 선임연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기기관리에 관한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간사업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 8 조 (운영위원회 직무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기기실의 중요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

② 공동기기실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(개정; 2011.01.06)

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#### 제 9 조 (의결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[ 제 4 장 운 영 ]

#### 제 10 조 (기기사용)

각 부서(센터)에서 공동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기 담당자의 관리를 받는다.

#### 제 11 조 (기기실장비)

① 기기실 장비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, 결정한 장비로 한다.

②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로 구입한 장비는 기기실에 설치하고 공동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 12 조 (기기사용일지작성)

기기실의 연구장비 사용자는 기기마다 비치되어 있는 사용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.

### 제 13 조 (사용제한)

기기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사용자의 기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과도한 독점적 기기사용
- ② 기기사용 후 주변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
- ③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기기사용을 하는 경우
- ④ 기타 기기실 장비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

### 제 14 조(기기사용료)

① 기기실 연구장비들의 사용료 및 소모품비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기기실 운영상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부담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③ 외부사용자에 한하여 사용료는 유료이며,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; 2011.01.06)

④ 제2항내지 제3항과 관련된 이용료의 부과 및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[ 제 5 장 재 정 ]

### 제 15 조 (회계년도)

기기실의 회계연도는 연구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제 16 조 (재원)

기기실의 재정은 매년 연구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 [ 제 6 장 보 칙 ]

### 제 17 조(규정의 개정)

①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제의로 발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공동기기실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외부사용자에게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운영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기기실 자체적으로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(신설; 2011.01.06)

[ 부 칙 ]

제1조(기존 장비의 기기실 장비 심의)

기존 연구원 기기 및 장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 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.

제2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.(승인; 2009.03.31.)

[ 부 칙 ]

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.(승인; 2011.01.06.)